

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

제정 2020. 5. 15 조례 제2026호
일부개정 2026. 4. 24 조례 제276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장의 책무)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병해충의 유입·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·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조(설치) 시장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(이하 “농업기술센터”라 한다)에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(이하 “예찰·방제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4조(구성) ① 예찰·방제단은 「식물방역법」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② 예찰·방제단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.

1. 농업기술상담소장
2. 벼 및 밭작물 병해충 담당 팀장
3. 벼 및 밭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담당자
4.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담당자

제5조(운영)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·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.

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

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임무) 예찰·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병해충 예찰·방제 계획 수립
2. 병해충 예찰·방제 추진 및 지도·점검
3.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·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
4.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를 위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
5. 병해충 예찰·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
6.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
7. 그 밖에 병해충 예찰·방제 현장 업무 수행

제7조(전문교육) 시장은 병해충 예찰·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·방제기술,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, 병원균·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8조(예찰·방제 인력 등 지원) 시장은 병해충 예찰·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(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,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)에게 인력,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병해충방제심의회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병해충방제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 할 수 있다.

1.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항
2.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

[전문개정 2026. 4. 24]

제10조(심의회의 구성 등)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.

② 심의회의 위원장은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예찰·방제단 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1. 병해충 예찰·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
 2.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
 3. 기술수준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
 4. 그 밖에 시장이 병해충 예찰·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-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를 두되, 간사는 병해충 예찰·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[본조신설 2026. 4. 24]

- 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6. 4. 24]

- 제12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,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[본조신설 2026. 4. 24]

- 제13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6. 4. 24]

- 제14조(수당 등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6. 4. 24]

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·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6. 4. 24 조례 제276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